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,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·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(안 제53조제1항 개정)
- 나.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(안 [별표 2]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,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(붙임)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100분의 30으로 한다”를 “일정비율로 하되, 대상 농지별 적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.
2.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.

별표 2 제3호소목 단서 중 “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호 우목 단서 중 “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일에도 불구하고

고 별표 2 제3호소목·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2023년 1월 1일 전에 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 제3호소목·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)	제53조(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)
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의 제공미터당 금액 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 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 시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 별공시지가의 <u>100분의 30으로</u> <u>한다.</u>	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정비율로 하되,</u> <u>대상 농지별 적용 비율은 다음</u> <u>각 호와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해당</u> <u>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</u> <u>의 30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2.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</u> <u>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</u> <u>100분의 20으로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7